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088

발의연월일: 2021. 2. 15.

발 의 자 : 임오경 · 박 정 · 김홍걸

최혜영 • 유정주 • 이수진

장철민 · 오영환 · 김민철

고용진 · 서영교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예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있음.

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이하 코로나19)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이 시행됨에 따라 공연활동 분야 전반이 침체됨.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공연예술 시설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.

이에 공연장 등 공연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·위생·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공연예술활동 향유를 장려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2항제7호).

법률 제 호
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공연장 등 공연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·위생·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)	제3조(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	②
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	
이 포함되는 공연예술진흥기본	
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	
하며, 공연예술의 지역적 균형	
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	
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	
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그 기본	
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	
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7. 공연장 등 공연시설의 감염
	병 등에 대한 안전・위생・방
	역 관리에 관한 사항
<u>7.</u> (생 략)	<u>8.</u> (현행과 같음)